

일본의 주류제도와 산업실태*

이 동 필

1. 사례연구의 배경

최근 쌀 소비 감소와 함께 농가소득 성장이 위축되자 전통주산업을 육성하여 국산농산물의 소비촉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주의 산업화는 제철에 그 고장에서 생산된 원료농산물의 소비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의 향토음식이나 지역축제 등과 결합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는 점에서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2007년 주류 총생산액은 3,698,799백만 엔이며 15,870백만 엔 상당의 수출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대표적인 술이라 할 수 있는 청주의 경우 생산액은 439,310백만 엔(합성청주 20,600백만 엔 제외)에 수출이 7,048백만엔으로 맥주와 소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주류식품통계연보 08-09년판). 최근 우리나라도 ‘사케 바’ 붐을 타고 많은 양의 일본청주를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는데 2006년의 665KL에서 2007년에는 1,069KL로, 금액은 2억8천6백만 엔에서 4억6천5백만 엔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사실 일본에서도 현대적인 양조기법이 보급되고 양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오래지 않다. 우리나라에 주세법이 도입된 것이 일본에 비해 10여년 후인

일본 청주의 경우 생산액은 439,310백만엔(합성청주 20,600백만엔 제외)에 수출이 7,048백만엔으로 맥주와 소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본 내용은 ‘전통주 국내의 산업현황 및 세계화 가능성 조사’ 연구의 일본 현지 조사 내용과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ldphil@krei.re.kr 02-3299-4342)

1909년으로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가 약 100여년의 양조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양조산업의 규모와 주류의 수출실적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즉 2007년의 경우 일본은 3조6,987억9천9백만 엔을 생산하고 158억 7천만 엔 상당을 수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7조3,018억 원을 생산하여 1억9,164만1천 달러 상당을 수출하였다. 더구나 일본은 쌀과 포도 등 국산농산물을 활용하여 전통주인 청주는 물론 위스키나 와인까지도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고부가가치상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수입원료를 사용한 대중주¹⁾에 치중한 나머지 대부분의 고급주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슷한 시기에 주세법을 제정하고 주류산업을 육성해 온 일본의 주류관련 제도와 산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전통주로서 세계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주산업을 살펴보고 성공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주산업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2007년의 경우 일본은 3조6,987억9천9백만엔을 생산하고 158억 7천만엔 상당을 수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7조3,018억원을 생산하여 1억9,164만1천달러 상당을 수출하였다.

2. 일본의 주류관련 제도

일본 주류제도의 개요

일본은 국가가 주류의 제조 및 유통면허를 하고 주세를 징수하는 엄격한 허가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주세법(1953.3.1시행)」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962.3.31 시행)에 기초하여 주류의 종류와 제조방법은 물론 주류의 제조 및 판매면허 요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규정함으로써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세법 체계는 일본 주세법을 모체로 하기 때문에 법제정의 목적이나 주류의 제조 및 유통면허, 과세표준 등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골격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²⁾

- 1) 일본의 주류산업은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이란 점에서 농가소득 및 농촌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4~05년 무렵에 일본에서는 쌀 28만톤, 보리 98만톤, 고구마 168만톤이 양조용으로 사용되는데 비해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는 쌀 13만2천톤, 보리 21만6천톤, 고구마 9천톤만 사용하고 있음
- 2) 우리나라에서 일본주는 1876년 부산에서 荒木某씨가 탁주를 제조한 것을 효시로 1884년 西峰三郎씨, 福田増兵衛씨 등이 부산에서 청주업을 시작하여 1897년부터 점차 마산, 인천, 서울 등 다른 곳에서 창업하는 사람이 나타남. 1897년 8월(光武 8년) 한일협약에 따라 目賀田種太랑郎이 제정고문에 취임하면서 주조방면의 조사가 실시되었고, 1909년 2월(康熙 3년) 주세법을 도입하여 양성주, 증류주, 혼성주의 3종으로 구분하고 종별 제조수량에 따라 과세하기에 이룸. 당시 조선의 조세제도는 1872(明治 초년)년에 도입한 일본주세법과 거의 동일하였음(조선주조사, p.49 및 p.463).

일본의 주세법은 대표적인 징세편의 위주의 규제법이었으나 최근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제조 및 유통 관련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일본은 「주세보전및주류조합등에관한법률」이란 법률로 주류에 대한 품질관리와 표시방법, 그리고 주류업단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다.

1872년에 도입한 일본의 주세법은 대표적인 징세편의 위주의 규제법이었으나 최근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제조 및 유통 관련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최근 개정(2006.5.1) 일본주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편의를 위해 주류의 종류를 4가지(발포성주류, 양조주류, 증류주류, 혼성주류)로 간소화하고 이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새로운 주세법에서는 주류를 17개 품목으로 구분하고, 청주는 알코올분이 22도 이상, 발포주는 알코올분 20도 이상은 제외한다든지 소주갑류를 연속식증류소주, 소주올류를 단식증류소주로 바꾸는 등 품목별 정의와 명칭을 변경하였다.

청주 또는 증류주류(연속식증류소주, 단식증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원료용알코올 또는 스피리츠)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받은 제조장에 있어서 자기가 제조한 청주 또는 증류주를 원료로 하여 리큐르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리큐르의 최저제조수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주세납세신고서 기재방법 중 과세이출과 미납세이출 수출면세를 폐지하고 환입 공제나 재 이출 등 공제 시 용기용량별 명세의 기재를 폐지함으로써 기재방법을 간편화하고 주류에 대한 표시사항을 개선하였다.

일본의 주류업무 행정체계

일본의 주세행정은 재무성(구 대장성) 주계국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외청인 국세청과 그 산하에 있는 11개 지방국세국이 면허와 품질관리, 주세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류의 품질관리는 국세청(감정관실), 지방국세국(과세2부-감정관실), 그리고 지방세무서(주류지도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11개 지방국세청에 감정관 68명을 배치하여 ① 간접국세 과세물건의 분석 및 감정, 기타 간접국세의 부과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것, ②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의 발달, 개선 및 조정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것, ③ 양조기술의 연구 및 개발과 주류의 품질 및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주류산업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양조에 적합한 품종육종 등의 연구와 함께 낙후지역의 진흥 또는 구조개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은 하지만 주류산업에 직접적인 행정적 연계는 없다.

일본의 주세행정은 재무성(구 대장성) 주계국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외청인 국세청과 그 산하에 있는 11개 지방국세국이 면허와 품질관리, 주세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주류의 품목별 정의와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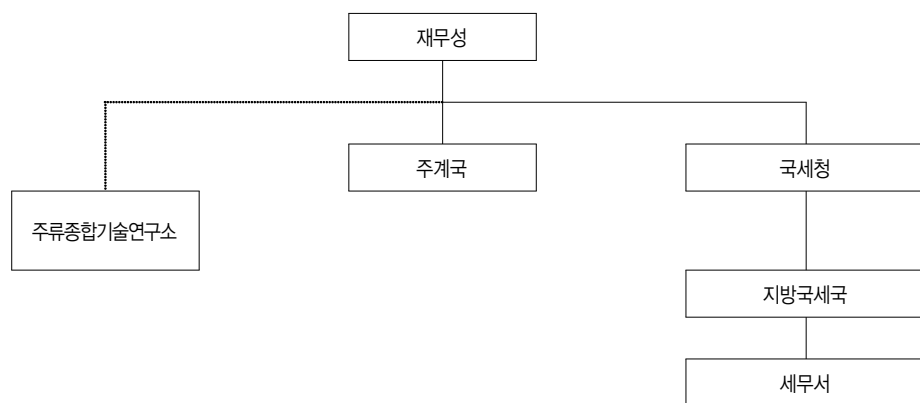
구주세법		신주세법	정의 및 개정내용
종류	품목	품목	
청 주		청 주	-알코올분이 22도 이상의 것을 제외 -쌀, 쌀국, 물 및 청주박 이외의 물품중량의 합계가 쌀(쌀국포함)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을 제외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서 “보리, 조, 옥수수, 고량, 수수, 피 혹은 전분 또는 이들 국” 을 제외
합성청주		합성청주	-알코올분이 16도 미만, 엑스분이 5도이상으로 산도가 일정이상인 것 이외는 제외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서 “보리, 조, 옥수수, 고량, 수수, 피 혹은 전분 또는 이들 국” 을 제외
소 주	소주갑류	연 속 식 증류소주	-명칭 변경
	소주을류	단 식 증류소주	-명칭 변경 -원료마다의 규정을 명칭화
미 림		미 림	-알코올분이 15도미만, 엑스분이 40도이상으로 원료포도당 등의 중량이 일정이하의 것 “ 이외를 제외
맥 주		맥 주	-알코올분이 20도 이상의 것을 제외
과실주류	과실주	과실주	-과실 또는 과실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에 대해서는 알코올분이 20도 이상의 것을 제외 -주류의 원료로 된 과실에 함유하는 당류의 중량을 초과하여 당류를 가하는 것을 제외 -주류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당류를 가한 것 제외
	감미과실주	감미과실주	-과실주로 되지않은 것과 과실주로 된 주류의 일부추가
위스키류	위스키	위스키	-동일
	브랜디	브랜디	-동일
스피릿츠류	스피릿츠	스피릿츠	-동일
	원료용알콜	원료용알콜	-동일
리큐르		리큐르	-명칭 변경
잡 주	발포주	발포주	-알코올분이 20도 이상의 것을 제외
	분말주	분말주	-동일
	기타잡주	기타양조주	-개정 전 주세법 규정에 의한 잡주(기타잡주)의 일부주류에 대해 품목을 신설 -알코올분이 20도미만, 엑스분 2도 이상의 것 이외의 것을 제외 -알코올 이외의 주류를 원료의 일부로 한 것을 제외 -알코올을 원료의 일부로 한 것으로 알코올분 15도 이상의 것 또는 알코올의 중량이 물 이외의 원료의 100분의 30이상의 것을 제외
	잡주	-이상의 주류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신설)	

2002년 행정개혁 차원에서 독립행정법인 '주류종합연구소'로 분리하여 주류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1904년 주류의 품질향상을 위해 대장성 산하에 '양조시험소'를 설립, 본격적인 양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주류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 하지만 2002년 행정개혁 차원에서 독립행정법인 '주류종합연구소(www.nrib.go.jp)'로 분리하여 주류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주류종합연구소는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과와 연구기획재무부, 품질안전성연구부, 양조기술기초연구부, 양조기술응용연구부, 양조기술개발연구부, 정보기술지원부 등 1과 6부문에 52(그중 연구직 38)명의 직원이 양조부문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주류의 감정분석품질평가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1 일본의 주류업무 행정체계



국세청 주류감정관실 및 지방국세국의 감정관은 양조업체들의 기술수준이 낮고, 청주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였을 때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1993년 청주평가제가 폐지되자 기능이 모호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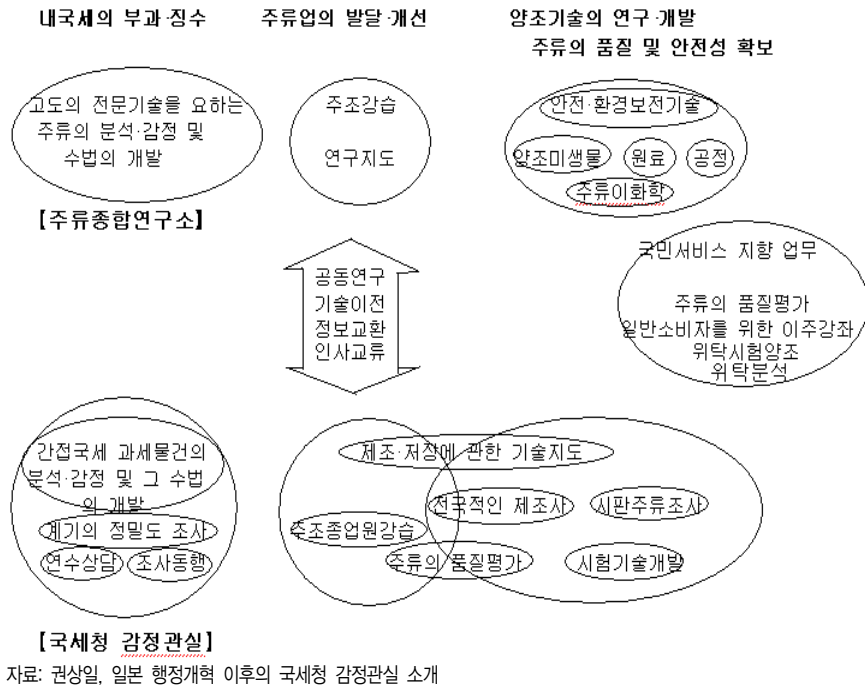
청주 및 소주 등 생산자들이 '일본양조조합중앙회(www.japansake.or.jp)'를 결성하여 여러 사업을 통해 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청주 및 소주 등 생산자들이 '일본양조조합중앙회(www.japansake.or.jp)'를 결성하여 ① 검사협조 및 주세위반 교도, ② 기준판매가격의 실시, ③ 주류의 판매가격제도 실시, ④ 주류의 표시와 관련시설, ⑤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통해 주류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조합에서 수행하는 역할에는 조합 소속업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자금의 채무보증과 일본주에 대한 매스컴보도, 박람회 등을 통한 홍보, 전국 술감정·선전대회 개최 등이 있다.

1996년에 설치된 '일본주서비스연구소(www.sakejapan.com)'는 일본주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및 계몽활동을 수행하며, 일본산 '청주원산지호칭제도'의 운영과 일본산 청주수출기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2 국세청 감정관실과 주류종합연구소의 관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지주(地酒) 상품을 소개하거나 좋아하는 제품의 검색은 물론 외국신문이나 잡지 등에 게재된 일본지주 관련 기사를 수집 하는 등 지주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청주원산지호칭제도(Sake Origin Control)는 일본주원산지호칭제도(SOC)와 전통적 원산지호칭제도(TSOC)로 구분되는데 모두가 생산지역에 따른 특징 보호 및 소비자 품질을 보증하는 시스템으로 국산 쌀과 특정지역의 물을 사용하는 등 일본청주의 차별적 유통에 기여하고 있다.

민간단체로서 일본嗜酒師(www.enjoy-sake.com), 일본주박물관(www.sakemuseum.com)과 日本酒銘柄辭典(www.hinocatv.ne.jp), 日本名門酒會(www.meimonshu.jp) 등이 일본 청주산업 발전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류의 종류를 11종으로 분류하였으나 2006년부터 주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종은 4종으로 단순화 하는 대신 주류상품의 품목은 17개로 세분화하였다.

일본에 있어서 주류의 종류, 제조 및 판매면어

일본은 주류를 4종류(발포성주류, 양조주류, 증류주류, 혼성주류)로 구분, KL당 각기 22만엔 14만엔, 20만엔, 22만엔의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래 주류의 종류를 11종으로 분류하였으나 소비자들의 선호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술이 출현함으로써 2006년부터 주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종은 4종으로 단순화 하는 대신 주류상품의 품목은 17개로 세분화하였다.

주류의 품목별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 없이 품목별로 용어의 정의(일본주세법 제2조)를 하고 개략적으로 규정한 대신 품목별 최저수량을 명시하고 있다.

〈표 2〉 주류의 종류별 품목과 최저생산량

종류	품 목	품목별 주류의 정의	최저생산량(KL)
발포성주류	맥주	맥아, 홉, 물을 원료로 해서 발효시킨 것	60
	발포주	맥아를 원료의 일부로 한 주류로 발포성을 가지고 있는 것(물과 호프를 제외한 주원료에서 맥아비율이 66.7% 미만의 것)	6
양조주류	청주	쌀, 쌀누룩, 물을 원료로 해서 발효시켜 거른것	60
	과실주	과실을 원료로 해서 발효시킨 것(예 : 포도주, 사과주)	6
	기타양조주		6
증류주류	연속식증류소주	알코올 함유물을 연속식 증류기로서 증류한 것으로 알코올성분 36도 미만의 것(감류, 희석식소주)	60
	단식증류소주	알코올 함유물을 상기 이외의 증류기로서 증류한 것으로 알코올성분 45도 이하의 것(을류, 증류식소주)	10
	위스키	발아시킨 곡류, 물을 원료로 해서 발효시킨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한 것	6
	브랜드	과실, 물을 원료로 해서 발효시킨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한 것	6
	원료용알코올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한 것으로 알코올성분 45도를 초과하는 것	6
	스피리츠	청주에서 위스키류까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류로 엑기스분이 2도 미만의 것(예 : 진, 위스키, 럼 등 도수가 높은 술)	6
혼성주류	합성청주	알코올, 소주, 포도당 등을 원료로 해서 제조한 주류로 청주에 유사한 것	60
	미림	쌀, 쌀누룩에 소주 또는 알코올,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물품을 첨가한 것	10
	감미과실주	과실주에 당류, 브랜드 등을 혼합한 것	6
	리큐르	주류와 당류 등을 원료로 한 주류 중 엑기스분이 2도 이상의 것(알콜에 과실, 감미료, 향료 등을 가미해서 만든 것)	6
	분말주	용해한 알코올성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의 것	6
	잡주	청주에서 분말주까지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류	6

주: 기타 발포성주류는 맥주 및 발포주 이외의 주류 중 알코올분이 10도 미만으로 발포성을 갖는 것으로 품목에서 제외

다만 일본주세법 시행령에서는 주류의 종류별 사용 가능한 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 및 유기원료표시 등 자율적으로 상품의 특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서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주류제조면허시 특정한 시설요건이 없이 품목별 연간 최저생산량 이상은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일본주세법 제7조)하고 있다(표 2).

다만 2004년부터 지역진흥을 위한 구조개혁특구에서 농원민박이나 레스토랑을 운영할 경우 자기가 생산한 쌀로 탁주(도부로구)³⁾를 생산, 제조장내에서 판매하거나 자기영업장에서 소비할 경우 최저생산량기준(잡주 6KL)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 현재 28개의 탁주특구로 지정(제조장구역 이외에서 선물로 판매할 경우는 주류판매면허가 필요)하였다.

이밖에 청주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에서 단식증류소주나 미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연속식증류소주 또는 단식증류소주의 제조면허자가 그 제조장에서 미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과실주 또는 감미과실주 제조면허 자가 그 제조장에서 브랜드를 제조할 경우 등은 최저생산량기준 적용배제(일본주세법 제7조 ②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다.

주류판매업면허시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시설기준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류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업면허도 허용하는 등 특히 소매면허를 대폭 자율화하여 손쉽게 주류판매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①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면허를 취득한 제조장에서 하는 주류판매업 및 술집, 음식점, 기타 주류를 음용하는 자기영업장 영업에 대해 별도의 판매면허를 면제(일본 주세법 제9조)한다든지, ② 제조자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슈퍼나 소매상과 거래 가능, 도매상과 도매상간의 거래할 수 있는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 점, ③ 시설이 없는 업체나 판매회사가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OEM방식의 생산을 허용하는 점, ④ 2006년 주세법 개정으로 2km이내 도매상허가금지 조건을 폐지하여 도매상의 면허기준을 완화하였다는 점, 그리고 ⑤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판매 허용⁴⁾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통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주류제조면허시 특정한 시설요건이 없이 품목별 연간 최저생산량 이상은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판매 또는 대리업면허도 허용하는 등 특히 소매면허를 대폭 자율화하여 손쉽게 주류판매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 도부로구는 일본주세법상 잡주에 해당하는데 쌀과 쌀입국과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하지 않은 술로 우리의 탁주와 유사함. 도부로구의 어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국이나 한반도로부터 벼재배와 함께 전해진 쌀로 만든 술덧이 혼합된 상태의 탁주를 濁膠(다구라우)로 부른 것이 사투리로 전해져 도부로구가 되었다고 함. 일본에서는 예부터 수확한 쌀을 신에게 바치는데 이 때 도부로구를 만들어 바치고 이듬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현재도 40개 이상의 신사가 도부로구로 제사를 지내고 있음((일본탁주와 도부로구 특구, 일본주류종합연구소 정보지)

4) 통신판매주류소매업면허는 판매하고자 하는 주류의 범위, 카달로그 등의 발행연월일이 속한 회계년도의 전 회계연도의 주류의 품목별 과세출고량이 모두 3천KL미만인 제조자가 제조, 판매하는 주류 또는 수입주류에 부여(일본주세통달, 제9조 11호 ④ 통신판

일본의 주류종류별 주세

일본의 주세는 종량세로 주류를 4종류로 분류하고 분류된 주류마다 과세하는 세율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류의 종류별 KL당 주세

분 류	기본세율	특별세율
발포성주류	220,000엔	발포주(맥아비율 25%이상 50%미만) 178,125엔 발포주(맥아비율 25%미만) 134,250엔 기타발포성주류 80,000엔
양조주류	140,000엔	청 주 120,000엔 과실주 80,000엔
증류주류	200,000엔(21도미만) 20도를 초과하는 1도당 가산액 10,000엔)	위 스 키 370,000엔(37도미만) 브 랜 디 370,000엔(37도미만) 스피릿츠 370,000엔(37도미만) (37도 이상 기본세율)
혼성주류	220,000엔(21도미만) 20도를 초과하는 1도당 가산액 11,000엔)	미림 및 잡주(미림유사) 20,000엔 감미과실주 및 리큐르 120,000엔(13도미만) (12도를 초과하는 1도당 가산액 10,000엔) 분말주 390,000엔

주 1 : 발포주로 특별세율이 적용되는 주류는 알코올분 10도미만의 것에 한정함

주 2 : 기타발포성주류중 특별세율이 적용되는 호프를 원료로 한 주류는 다음의 것에 한정함: ① 당류, 홉, 물 및 대두단백 등(시행령에서 정하는물품)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엑스분 2도 이상의 것), ② 발포주(시행령에서 정한 것)에 스피릿츠(시행령에서 정한 것)를 가한 것(엑스분이 2도 이상의 것)

일본주류의 지리적 표시

「주세보전및주류조합등에관한법률」 제86조의 6(주류의 표시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에관한표시기준(일본 국세청고시, 1994.12.28)’ 제2항에 의해 일본에서 보호하는 포도주, 증류주 또는 청주의 산지 중 국세청장관이 지정하는 산지의 지정) 및 일본이 보호하는 단식증류소주의 지리적표시대상은 (표 4)와 같은데 해당 산지외의 지역을 산지로 하는 단식증류소주 등에는 이러한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매 주류소매업면허의 수급조정 요건)

- 5) 장관 지정산지는 ① 특별한 품질특성과 사회적 평가를 얻는 포도주, 증류주 또는 청주를 생산하며, 그 명칭이 당해 포도주 등의 특별한 품질특성과 사회적 평가를 명시하는 포도주 등의 생산 지역일 것, ② 지리적표시에 관한 표시기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정산지 이외의 지역을 산지로 하는 포도주 등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해 지정산지는 일본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리적 표시를 특정하게 하는 것일 것, ③ 일본 이외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청주산지를 장관지정 산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에서 당해 청주산지가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어 있을 것 등을 전제로 함(일본주세통달 제8편제86조의 6의 ③)

표 4 일본에서 등록하여 보호하는 지리적표시 대상

산 지	지리적표시 대상의 규격기준
이키 (壹岐)	쌀누룩 및 나가사키현 이키시의 지하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1차 술덧에 보리 및 이키의 지하수를 첨가하여 더 발효시킨 2차 술덧을 나가사키현 이키시에서 단식증류기로 증류하고 용기에 주입한 것이 아니면 '이키'의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
구마 (球磨)	쌀누룩 및 구마강의 복류수인 구마모토현 구마군 또는 구마모토현 히토요시(人吉)시의 지하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1차 술덧에 쌀 및 구마의 지하수를 첨가하여 더 발효시킨 2차 술덧을 구마모토현 구마군 또는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에서 단식증류기로 증류하고 용기에 주입한 것이 아니면 '구마'의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
류큐 (琉球)	쌀누룩(흑누룩균을 사용한 것에 한정)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1차 술덧을 오키나와 현에서 단식증류기로 증류하고 용기에 주입한 것이 아니면 '류큐'의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
사쓰마 (薩摩)	쌀누룩 또는 가고시마현산 고구마를 사용한 고구마누룩 및 가고시마현산 고구마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에 가고시마현 내(아마미(奄美)시 및 오시마(大島)군 제외)에서 단식증류기로 증류하고 용기에 주입한 것이 아니면 '사쓰마'의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
하쿠산 (白山)	흰쌀, 쌀누룩 및 이시가와현 하쿠산시의 지하수 또는 이와 양조알콜을 원료로 하여 이시가와현 하쿠산시에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용기에 주입한 것이 아니면 '하쿠산'의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 다만 흰쌀, 쌀누룩에 사용하는 원료쌀은 농산물검사법(1951년 법률 제133호)에서 정하는 양조용 현미 1등 이상의 등급이 매겨진 것으로 정미비율 70% 이하인 것, 누룩쌀 사용비율 20% 이상인 것에 한함. 밑술은 '생원', '산폐원', 또는 '속양원'으로 하고, 술덧은 '증양', '액화제조'는 제외함

일본주류에서 유기농 및 유전자조작 등의 표시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류에 대한 유기농표시기준(2000.12.26, 국제청고시 제7호)'에 따라 주류제조사 유기농표시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유기농' 또는 '오르가닉(Organic)'이란 표시는 유기농 농산물가공주류의 제조방법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류에 대해 표시할 수 있으나 이를 의무화 하지는 않고 있다.

주류에 대한 유전자조작표시는 '유전자조작에 관한 표시와 관련한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2000년 농림수산성고시 제517호)의 가공식품 규정을 준용(일본주세통달 제8편 제86조의 6의 ① ⑤)하고 있다.

'주류에 대한 유기농표시기준에 따라 주류제조사 유기농표시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표 5 일본주류에 대한 의무표시 내용

주류제조업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	주류판매업자가 보세지역으로부터 수취하는 주류, 주류판매업자가 재병입하여 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
-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제조장 소재지	거래선 또는 재병입장소 소재지
용기용량(분말주는 중량)	용기용량(분말주는 중량)
주류의 품목	주류의 품목
주류의 알코올분(분말주는 제외)	주류의 알코올분(분말주는 제외)
세율적용구분(발포성 및 잡주에 한함)	세율적용구분(발포성 및 잡주에 한함)
발포성을 갖는 뜻 및 세율적용구분(기타발포성주류에 한함)	발포성을 갖는 뜻 및 세율적용구분 (기타발포성주류에 한함)

주: 표시사항은 상기주류의 포장에 대해서도 적용.

전통주 및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배려

수급조정 필요에 의해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주원료로 연간 100KL미만까지 단순증류소주 제조면허, 청주제조 후 주박으로 증류식소주제조 등은 예외로 신규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특산품 중 쌀, 보리, 고구마 또는 메밀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제조장이 소재하는 도·도·부·현이 신청하고자 하는 날이 속한 연도 앞의 3개년 평균 과세출고수량과 평균 소매수량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작은 경우에 제조면허를 허용(일본주세통달, 제9조 11호 단식증류소주)한다.

구조개혁특구에서 농가민박이나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특정농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쌀로 하는 기타양조주(막걸리)를 제조·판매할 경우 제조면허시 필요한 최저생산량기준 적용을 배제하여 보다 쉽게 주류제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주세법에 따라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품목별, 제조장별로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신청자의 법률준수 및 경영기초 상황과 제조기술능력, 제조설비상황, 그리고 제조면허를 받고 1년간 최저생산량 등을 심사하여 제조허가를 하는데, 「구조조정특구법」에 의한 주세법특별조항에 따라 구조개혁특별구역으로 인정받은 지역에서 농가민박이나 농원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농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쌀로 자기 영업장에서 마시는 주류를 생산할 경우 제조허가에 필요한 연간 최저 제조수량기준의 적용을 배제한다. 특구 내 자기영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식사와 함께 제공할 때는 판매면허가

필요 없지만 부설 토산품판매장 등을 통해 특구구역 밖으로 판매할 때는 판매면허가 필요하다.

일본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해 연간 1,300KL이하 소규모 일본주업체가 생산하는 주류 중 200KL까지는 세금의 25%를 감면함으로써 영세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해 연간 1,300KL이하 소규모 일본주업체가 생산하는 주류 중 200KL까지는 세금의 25%를 감면함으로써 영세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 일본 주류산업의 실태

주류시장 연망

2008년 일본의 주류생산액은 대략 3조6천912억엔으로 추정되는데 2001년의 4조2천155억엔에 비해 생산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식품산업은 23조3천124억엔에서 23조8천885억엔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주류산업의 비중은 2001년의 18.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15.5%를 차지하고 있다.

주류의 종류별 생산액 규모는 생산량에 있어서 맥주(36.0%)와 잡주(25.1%), 리큐르류(14.7%), 소주(10.6%), 청주(7.4%)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생산액에서는 맥주(37.0%), 잡주(19.5%), 소주(14.9%), 청주(11.5%), 리큐르(8.6%)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소주와 청주가 상대적으로 고가 상품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약 2천500억엔 상당의 주류를 수입하는 한편 158억 7천만엔 상당의 술을 수출하고 있다. 수입물량을 고려하여 일본의 주류 과세수량 변화추세를 보면 전통적으로 과세수량의 점유율이 높은 맥주, 발포주, 청주, 위스키류의 과세 수량이 줄어들고 소주(특히 증류식소주) 및 저알콜 주류인 스피리츠류, 리큐르류의 과세수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8년 일본의 주류시장은 대략 3조6천912억엔으로 추정되는데 2001년의 4조2천155억엔에 비해 시장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표 6 주류의 종류별 생산실태

단위: KL, 100만엔

구 분	2001		2005		2008(P)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청주	949,068	618,560	729,458	477,165	651,600	424,400
합성청주	64,140	24,317	65,170	24,728	49,400	20,600
소주	776,067	418,250	963,568	522,107	933,800	549,600
미린	106,017	46,076	110,724	48,103	113,700	46,000
맥주	4,777,660	1,981,663	3,613,177	1,502,040	3,170,000	1,367,000
과실주류	110,511	77,219	102,858	71,982	86,700	76,400
위스키	89,067	162,599	67,118	115,276	58,100	106,600
브랜디	13,284	30,663	7,537	17,447	5,800	13,900
스피리츠류	21,444	18,426	74,669	26,697	220,600	50,200
리큐르류	486,160	141,017	743,023	217,724	1,295,500	316,500
잡주	2,344,690	696,702	2,719,098	766,521	2,208,800	720,000
합 계	9,738,110	4,215,492	9,196,428	3,789,790	8,784,000	3,691,200

자료: 일간경제통신사, 일본 주류식품통계연보 08~09년판

표 7 주류과세수량(일본산+수입주) 변화

(단위 : 천KL)

품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청 주	898	842	753	729	715	676	652
합성청주	67	64	64	65	59	56	49
소 주	연속식	483	511	519	505	492	498
	단 식	395	471	534	539	545	569
	소 계	878	982	1,053	1,044	1,036	1,034
미 린	107	109	108	112	117	115	115
맥 주	4,299	3,955	3,837	3,642	3,606	3,466	3,197
과실 주류	과실주	270	248	241	257	263	238
	감미과실주	10	8	7	7	10	10
	소 계	280	256	248	264	272	248
위스 키류	위스키	106	97	86	84	78	74
	브랜드	15	13	11	10	9	9
	소 계	121	110	97	94	86	83
스피리츠류	29	52	81	83	102	129	228
리큐르류	587	615	732	770	706	1,066	1,364
잡 주	발포주	2,646	2,527	2,308	1,699	1,455	1,535
	기 타	12	54	272	1,047	1,325	856
	소 계	2,658	2,581	2,579	2,746	2,780	2,391
합 계	9,922	9,566	9,553	9,549	9,481	9,264	9,187

일본의 주류시장 규모 변화추세

2007년 기준 일본의 전체 주류 소비액(시장규모)은 약 5조197억엔으로 추정되며, 주류수입은 2006년의 2천283억엔에서 2007년에는 2천386억엔으로 조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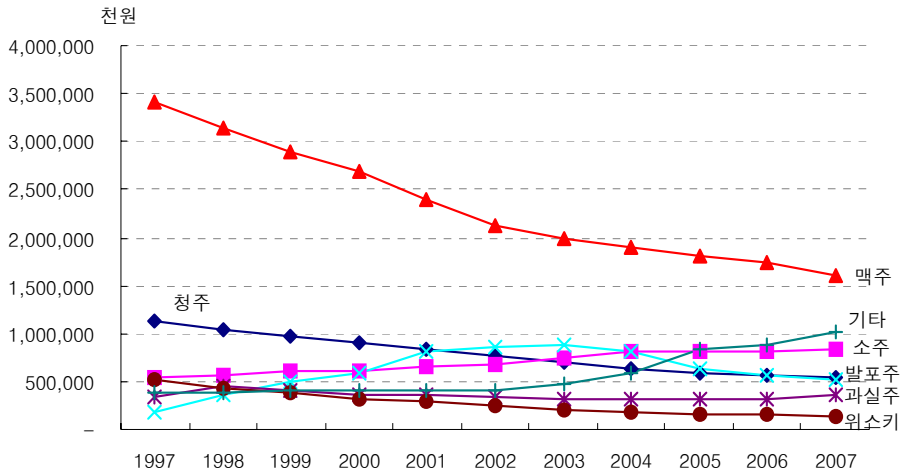
2007년 기준 일본의 전체 주류 소비액(시장규모)은 약 5조197억엔으로 추정되는데, 주종별로는 맥주(31.9%)>기타(20.3%)>소주(16.6%)>청주(10.7%)>발포주(10.5%)>기타(8.3%)>과실주(7.3%)>위스키(2.9%)의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 주류시장의 변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맥주와 소주, 청주를 많이 소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기타주류와 증류식소주, 스피리츠류 및 리큐르류의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맥주와 청부, 발포주, 위스키 및 브랜드 등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주류수입은 2006년의 2천283억엔에서 2007년에는 2천386억엔으로 조금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 일본의 주류수입액을 주종별로 보면 포도주가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밖에 스파클링와인 18%, 위스키 10% 등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맥주나 탁주의 경우 수량측면에서는 각기 6.2% 및 0.6%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에서는 2.5% 및 0.1%만 차지하고 있으며, 와인이나 포도주, 위스키 등 고가의 주류는 수입량보다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주류의 종류별 매출액 변화추이



수입국을 보면 맥주의 경우 주로 아일랜드와 멕시코, 벨기에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스파클링와인은 프랑스, 포도주는 미국과 프랑스, 아르헨티나, 에칠알콜은 브라질, 브랜디는 프랑스, 위스키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8 일본의 주류수입 실태

(단위: KI 백마에)

구 분	2006		2007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맥주	37,707(7.3)	6,142(2.7)	31,830(6.2)	5,867(2.5)
스파클링와인	19,799(3.8)	39,111(17.1)	20,713(4.1)	42,832(18.0)
포도주	152,780(29.6)	96,389(42.2)	152,826(30.0)	103,451(43.4)
청주·탁주	3,534(0.7)	359(0.2)	2,928(0.6)	314(0.1)
발포주(과즙첨가)	9,798(1.9)	3,494(1.5)	3,541(0.7)	2,358(1.0)
맥아발포주	19,762(3.8)	1,666(0.7)	28,393(5.6)	2,421(1.0)
사과주 등	9,112(1.8)	2,310(1.0)	10,483(2.1)	2,567(1.1)
에칠알콜	96,956(18.8)	6,001(2.6)	94,694(18.6)	6,196(2.6)
브랜디·브랜디원주	4,600(0.9)	12,272(5.4)	4,463(0.9)	11,863(5.0)
위스키·위스키원주	17,996(3.5)	25,655(11.2)	16,929(3.3)	25,354(10.6)
리큐르등	18,752(3.6)	12,077(5.3)	21,014(4.1)	12,191(5.1)
기타 증류주	90,311(17.5)	14,052(6.2)	86,465(17.0)	13,425(5.6)
합성청주, 백주	17,362(3.4)	1,517(0.7)	17,693(3.5)	1,671(0.7)
합 계	515,477	228,315	509,676	238,614

주: 합계는 전체 주류수입 전체로 ()는 주요 품목별 비중을 의

일본의 주류수출은 2006년의 141억6천만엔에서 2007년에는 158억7천만엔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주류수출은 2006년의 141억6천만 엔에서 2007년에는 158억7천만엔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종별로는 청주가 4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밖에 맥주 17.7%, 위스키 7.5%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청주를 수출하는 대상 국가는 미국이 4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밖에 대만 24.1%, 한국과 홍콩이 각기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표 9 일본의 주류수출 실태

단위: KL, 백만엔

구 분	2006		2007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맥주	27,029(57.4)	2,897(20.5)	23,130(51.7)	2,816(17.7)
포도주	422(0.9)	210(1.5)	340(0.8)	230(1.4)
청주	10,269(21.8)	6,105(43.1)	11,334(25.3)	7,048(44.4)
사과주 등	680(1.4)	282(2.0)	829(1.9)	344(2.2)
에칠알콜	81(0.2)	152(1.1)	112(0.3)	146(0.9)
위스키	915(1.9)	1,070(7.6)	914(2.0)	1,192(7.5)
리큐르등	2,434(5.2)	1,347(9.5)	2,710(6.1)	1,586(10.0)
합 계	47,099	14,160	44,750	15,870

주: 합계는 전체 주류수입 전체로 ()는 주요 품목별 비중을 의미

2007년 일본의 대 한국 주류수출은 11억3,745만 엔, 수입은 151억2,647만 엔으로 같은 해 일본의 전체 주류수출액 158억7천만 엔 및 수입액 2천386억1천만 엔의 7.2% 및 6.3%를 차지하고 있다.

주종별로는 일본맥주 및 청주와 위스키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으로부터 기타증류주와 맥아발포주, 보드카 등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들의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2001년의 95.7리터에서 2006년에는 86.5리터로 감소하였다. 주종별로는 소주가 7.9리터에서 9.8리터로 늘어난 외에 대부분 주류의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도 맥주가 46.2리터에서 32.3리터로, 청주가 9.4리터에서 6.7리터로 각각 감소하였다.

1인당 연간 주류소비에 지출한 금액도 1999년의 61,303엔에서 2006년의 48,644엔으로 줄어들고 있음. 주종별로는 소주가 6,012엔에서 7,972엔으로 증가한데 비해 맥주는 28,841엔에서 16,799엔으로, 청주는 9,721엔에서 5,375엔으로 각기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주류소비의 감소는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증대와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술에 취하기보다 조금씩 즐기면서 마시는 새로운 음주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10 일본의 대 한국 주류수출입 실태

단위: 리터, 1,000엔

구 분	수 출		수 입	
	2006	2007	2006	2007
맥주	293,567(34.0)	440,431(38.7)	179,305(1.2)	136,653(0.9)
스파클링와인	5,874(0.7)	555(0.0)	0	-
포도주	7,668(0.9)	4,203(0.4)	542(0.0)	2,277(0.0)
기타포도주	3,693(0.4)	3,024(0.3)	0	-
베르뮷	0	4,696(0.4)	0	-
청주	286,306(33.1)	465,185(40.9)	0	-
탁주·청주	-	-	282,666(1.9)	222,675(1.5)
사과주	2,911(0.3)	1,608(0.1)	153,291(1.1)	248,689(1.6)
발효주	-	-	11,269(0.1)	5,823(0.0)
맥이발포주	-	-	1,272,721(8.8)	1,988,931(13.1)
에칭알코올	1,814(0.2)	-	0	0
브랜디	2,352(0.3)	10,524(0.9)	0	0
위스키	183,628(21.2)	124,877(11.0)	19,636(0.1)	-
리큐르	34,722(4.0)	39,916(3.5)	127,683(0.9)	259,643(1.7)
럼	422(0.0)	0	0	0
보드카	0	0	1,178,645(8.1)	1,422,273(9.4)
기타증류주	-	-	11,282,340(77.8)	10,839,502(71.7)
기타알콜음료	-	-	2,891(0.0)	0
기타	41,441(4.8)	42,435(3.7)	0	0
합 계	864,398	1,137,454	14,499,720	15,126,466

자료: 일간경제통신사, 주류식품통계연보 08~09년판

표 11 일본의 1인당 연간 주류소비추세

(단위: 리터, 엔)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청주	수량	-	-	9.4	8.7	8.1	7.3	7.1	6.7
	금액	9,721	8,887	8,326	7,593	8,093	7,275	5,770	5,375
합성청주	수량	-	-	0.6	0.6	0.6	0.6	0.6	0.6
	금액	320	331	340	338	623	612	351	304
소주	수량	-	-	7.9	8.1	9.1	9.7	9.8	9.8
	금액	6,012	6,034	6,479	6,700	9,164	9,720	7,972	7,910
맥주	수량	-	-	46.2	40.7	37.2	35.6	33.5	32.3
	금액	28,841	26,723	23,898	20,976	37,374	35,643	17,467	16,799
위스키	수량	-	-	1.4	1.2	1.1	1.0	0.9	0.8
	금액	3,729	3,146	2,847	2,492	1,095	967	1,562	1,467
과실주류	수량	-	-	2.7	2.7	2.4	2.3	2.4	2.3
	금액	4,008	3,667	3,480	3,426	2,429	2,294	3,134	3,006
합계	수량	-	-	95.7	93.1	89.7	89.0	88.7	86.5
	금액	61,303	58,387	57,055	53,760	90,112	89,217	49,596	48,644

자료: 일간경제통신사, 주류식품통계연보 08~09년판

참고자료

- 김완배, 한국과 일본의 주류산업 비교, 서울대학교, 2007
권상일, 일본 행정개혁 이후의 국세청 감정관실 소개
대한민국법제처, 주세법 및 등법 시행령, 시행규칙, 2008
배상면역, 조선주조사, 우곡출판사, 2007
윤석황, 일본의 전통주시장 동향, 농수산물무역정보, 2004.5
이동필, 일본청주산업출장복명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일본국세청, 일본주세법, 대한주류공업협회(역), 2008.10
일본국세청, 일본주세통달, 대한주류공업협회(역), 2008.10
일간경제통신사, 일본주류통계연보 2008-09년판
_____, 주류식품통계월보, 2009 2월호
일본국세국, 특산품소주제조면허신청 등의 요령, 2008
일본세무서, 일반 주류소매업면허신청요령, 2009
일본세무서, 구조개혁특구에 있어서 제조면허 요령(특정농업자에 대한 탁주제조용), 2009
주류종합연구소, 주류종합연구소 개요, 2009
小鳥喜市郎, 야마나시현 주조조합의 수요개발활동, 일본양조협회지 Vol.97 No4 pp.236-239, 2002
山口隆英, 일본주의 해외시장에서 수용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2005
條田次郎, 일본의 술만들기, 음양고주의 등장, 중공신서, 2002
高兵春男, 두씨 천년의 지혜, 양전사, 2003
稻垣眞美, 일본의 명주 160선, 신조사, 2001
小川喜八郎.永山久春, 본격소주, 미야자기문고, 2002